

모자보건법

<목 차>

1. 임신출산종합상담기관의 지정 및 별칙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보건복지부	작 성 자	이름	이우정
	담당부서 (과)	출산정책과		직급	주무관
	국장	최종균		연락처	044-202-3402
	과장	손문금		이메일	lwj1017@mail.go.kr

2020. 9. 29. 작성

정책책임자 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임신출산종합상담기관의 지정 및 벌칙											
	2.규제조문	모자보건법 개정안 제7조의4 및 제26조제1항제1호											
	3.위임법령	해당없음								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0.10.07 ~ 2020.10.20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('19.4.11)에 따라 '20.12.31일까지 개선입법 필요 - 법개정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임신·출산 종합상담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원 활용 필요 - 임신·출산 종합상담 관련 상담사실확인서의 공신력을 위해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발급 필요											
	7.규제내용	○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아야 함 ○ 모자보건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			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○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 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○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</td><td></td></tr>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○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	피규제자	○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		이해관계자	○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	
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										
피규제자	○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												
이해관계자	○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												
9.규제목표	○ 상담기관의 접근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를 통한 임신·출산 종합상담체계의 성공적 안착 및 활성화 가능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							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					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해당없음											
기타	12.일 물 설 정 여부	미설정											
	13. 우선허용·	해당없음											

	사후 규제 적용여부	
--	---------------	--

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7조의4(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보건복지부장관 등”이라 한다)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제7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‘상담사실확인서’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
현행	개정안
	<u>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 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</u> <u>지정을 받은 경우</u> <u>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</u> <u>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</u> <u>3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</u> <u>못하게 된 경우</u> <u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</u> <u>유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</u> <u>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</u> <u>문을 하여야 한다.</u> <u>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</u> <u>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설></u> 1.(생략) 3.4.(생략) ②·③(생략)	<u>제26조(벌칙)①</u> ----- ----- ----- ---. 1. <u>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</u> <u>않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자</u> 2. <u>(현행 제1호와 같음)</u> 4.5(<u>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</u>) ②·③(<u>현행과 같음</u>)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자기낙태죄,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('19.4.11.)과 입법시한인 '20.12.31일까지 개선입법 필요
 - 현재의 결정이유 중 낙태 갈등상황에 있는 여성이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제공, 상담기회의 제공 등을 받는 '정보접근성'을 강조한 취지에 따라 법개정 후속조치로써 임신·출산 종합상담체계 구축
 - * 15~44세 가임여성 10,000명 조사 95%이상이 인공임신중절 전후에 “상담 및 심리적 지지” 필요하다고 응답('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, 보사연)
- 접근성·공공성·정책연계성 확보, 여성의 낙인감 없는 상담을 위해 보건소에 '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'을 설치하되, 민간상담자원 활용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도 지정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기관 접근성 제고
- 개정되는 「형법」 낙태의 합법적 허용요건에서 임신 15주~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 시술 전 상담을 의무화함에 따라, 임신의 유지·중결에 대한 상담사실 증명을 위해 확인서가 요구됨.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에 필요한 상담사실확인서이므로 공신력을 위해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발급이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자기낙태죄,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('19.4.11.)과 입법시한인 '20.12.31일까지 개선입법 필요
 - 현재의 결정이유 중 낙태 갈등상황에 있는 여성이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제공, 상담기회의 제공 등을 받는 '정보접근성'을 강조한 취지에 따라 법개정 후속조치로써 임신·출산 종합상담체계 구축

* 15~44세 가임여성 10,000명 조사 95%이상이 인공임신중절 전후에 “상담 및 심리적 지지” 필요하다고 응답('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, 보사연)

- 접근성·공공성·정책연계성 확보, 여성의 낙인감 없는 상담을 위해 보건소에 ‘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’을 설치하되, 민간상담자원 활용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도 지정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기관 접근성 제고
- 개정되는 「형법」 낙태의 합법적 허용요건에서 임신 15주~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 시술 전 상담을 의무화함에 따라, 임신의 유지·중결에 대한 상담사실 증명을 위해 확인서가 요구됨.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에 필요한 상담사실확인서이므로 공신력을 위해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발급이 필요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관계기관 등	입법예고 (10.6.10.19)	

3. 규제목표

- 임신·출산 관련 전문상담 인프라 구축·운영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사회·심리적 상담 제공으로 위기갈등상황의 임신·출산에 대한 지원과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
- 위반자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행위 감소라는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하여 임신·출산 상담체계의 안정적 운영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임신·출산 종합상담체계 구축·운영에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상담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로서 현재 결정취지에 따른

이행조치를 구체화한 것임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규제 대상 집단은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해당사항 없음

① 규제 영역		
② 규제 방식		
③ 예비분석모델		
	판단 근거	

④ 대상 업종	
⑤ 예비분석내용	
⑥ 차등화적용 여부	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미설정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해당없음

분류	적용여부	적용내용/미적용사유
포괄적 개념 정의		
유연한 분류 체계		
네거티브 리스트		
사후 평가관리		
규제 샌드박스		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◆ 독일

- 형법에서 임신 1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(3일)을 조건으로 허용하며, 의학적 사유와 범죄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이 비의무적임
- 임신갈등법에 따라 주에서 인가받은 **임신갈등상담소***에서만 상담가능하고, 상담종료 후에는 임신한 여성에게 최종 상담일자, 임신 여성의 성명이 기재된 **상담확인서**를 발급
- 상담사의 자격은 임신갈등상담을 위한 교육 및 시험을 통해 자격 취득

* 임신갈등상담소

- 주의 인가를 받아 민간 혹은 공공 상담소에서 운영
- 각 주는 4만명 당 한 개의 임신갈등상담소가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인가를 할 의무가 있음
- 가장 대표적으로는 1952년 설립된 성건강 관련 상담기관인 ‘베를린 프로 파밀리아(민간)’가 있으며, 독일 전역에 180여개의 임신갈등상담소를 운영

○ 타법사례

◆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)

- 지정 기준을 갖춘 민간의료시설에 대해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

제27조(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립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**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·가족·친지나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보건 상담 및 지도

2. 치료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·정신적 치료

③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

3.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, 절차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◆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(벌칙)

-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, 상담소의 설치·운영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제3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 자

3. 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한 자

4.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

5.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사업 참여 여부는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참여 의사가 없는 기관은 추가적 부담이 없으므로 준수할 것으로 판단됨
- 임신·출산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적법하므로 준수할 것으로 판단됨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며, 위법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므로 관련 업무의 수행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·인력 등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을 결정하는 업무로, 추가적인 예산증액 등 재정적 부담이 없어,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○ 각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간 협의 진행

- * 이해관계집단 토론회 참석(젠더법학회, 산부인과학회 등 10회), 각계 간담회(여성계·법조계·의료계·종교계 등 약 27개 단체, '19.5~11월, 8회), 법무부·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('20.1~, 9회)

○ 입법예고(10.6~10.19) 실시 중

2. 향후 평가계획

○ 해당사항 없음

3. 종합결론

- 현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('19.4)의 이행조치로서 새로 도입되는 임신·출산종합상담체계가 기존의 민간자원을 활용해 빠른 정착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,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
- 또한 벌칙규정은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방지하고 위반자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위반행위 감소라는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